

# 2026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을 통하여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을 납부하여 거주하고, 일반 월임대료의 차액 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본 모집공고일은 **2026. 04 .17.(금)**이며, 이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의 **판단 기준일** 이 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천원주택 1주택** 신청 및 입주계약이 가능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
  - **2025년 천원주택(매입·전세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입주한 경우** 본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 금회 공급물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총 300호이며, 공급물량의 2배수를 (추가)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단, **총 공급물량의 30% 범위 이내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하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기간 및 절차 등

## ■ 신청기간 : 2026. 05. 11.(월) ~ 2026. 05. 1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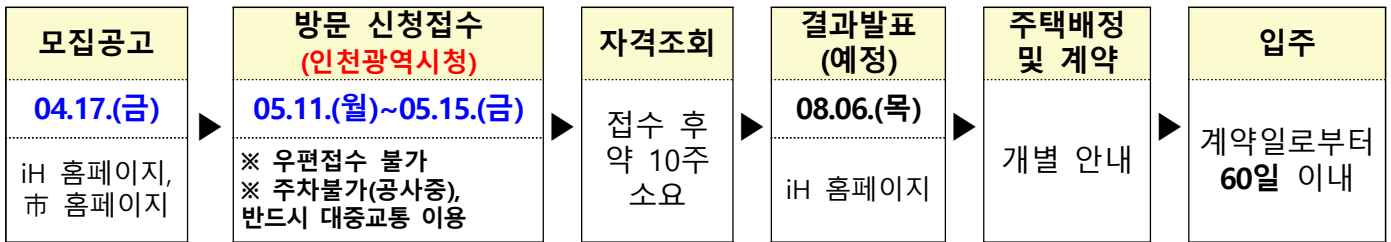
○ 접수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인천광역시청 주차장이 공사 중인 관계로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 신청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공급개요

## ■ 공급물량 : 총 300호

## ■ 공급유형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 공급지역 및 주택 :

○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2개 이상인 주택

○ 관내 소재지별 주택, 면적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주택목록」 참조

※ 본 공고의 공급기간동안 추가 물량 확보시 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 ■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천원주택 월임대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반 월임대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주자 부담 월임대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지원 월임대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월임대료 3만원</b>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별도)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b>일반 월임대료의 차액부분</b> </td> </tr> </tbody> </table>	일반 월임대료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인천광역시 지원 월임대료	<b>월임대료 3만원</b>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별도)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b>일반 월임대료의 차액부분</b>
일반 월임대료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	인천광역시 지원 월임대료						
<b>월임대료 3만원</b>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별도)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b>일반 월임대료의 차액부분</b>						

※ 관계법령에 따라 천원주택 월임대료를 지원하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입주안내 시 개별 통보 예정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련,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부담**

## ■ 임대기간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간**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 월임대료(시중 시세의 30~50% 수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 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임대료 등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p><b>임대기간 : 2년</b>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b>2년 단위로 4회 재계약</b>)</p> <p>-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b>2회 연장</b> 가능</p> <p>※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25.12.22.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p> <p>-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p>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p><b>적용기간 : 최장 6년</b> (최초 <b>2년</b> 계약, <b>2년 단위로 2회 재계약</b>)</p> <p>- 천원주택 월임대료를 적용한 계약 종료 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의 일반 월임대료(시중시세의 30~5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잔여 재계약 횟수 한도 내 재계약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미성년 자녀 유무</th> <th colspan="2">계약 횟수 한도</th> </tr> <tr> <th>천원주택 월임대료</th> <th>일반 월임대료</th> </tr> </thead> <tbody> <tr> <td>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td> <td><b>3회(6년)</b></td> <td><b>2회(4년)</b></td> </tr> <tr> <td>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td> <td><b>3회(6년)</b></td> <td><b>4회(8년)</b></td> </tr> <tr> <td>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td> <td><b>3회(6년)</b></td> <td>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td> </tr> </tbody> </table>	미성년 자녀 유무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일반 월임대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b>3회(6년)</b>	<b>2회(4년)</b>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b>3회(6년)</b>	<b>4회(8년)</b>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b>3회(6년)</b>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미성년 자녀 유무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일반 월임대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b>3회(6년)</b>	<b>2회(4년)</b>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b>3회(6년)</b>	<b>4회(8년)</b>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b>3회(6년)</b>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소득·자산 기준

#### ■ 모집공고일(2026.04.17.) 기준, 유형별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합니다.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자격검증대상이 됩니다.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 되어야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소득 및 자산 기준

\* 국토교통부 2026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유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b>130% 이하</b>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b>200%이하</b> )	· 총자산 <b>36,200만원 이하</b> ※ 임대 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b>130%</b>	8,212,778원	10,618,958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b>200%</b>	12,319,167원	16,336,858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 ※ 2023.03.28. 이후 출생(입양, 태아 포함) 자녀 수에 따른 자산기준

구분	출생 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b>362,000,000원 이하</b>	<b>397,000,000원 이하</b>	<b>431,000,000원 이하</b>

(\*) 출생자녀수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공통]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2026.04.1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II 유형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신생아 가구**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4.04.17. 이후, 출생 자녀·출생한 입양 자녀·태아)
- ②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04.17. ~ ’26.04.17.)인 사람
- ③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⑤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9.04.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⑥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4.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일반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 선정 대상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가구</li> <li>•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li> </ul>
2순위	1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li> <li>•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li> </ul>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li> </ul>
4순위	1, 2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li> </ul>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가구</li> </ul>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순위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b>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b>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차상위계층	3점  2점
<b>② 자녀의 수</b>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4점 3점 2점
<b>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b>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04.17. * 발급관리번호 : 2026980084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b>④ 신청자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b>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b>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b>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b>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b> *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없음	65세 이상(1961.04.17.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가점항목은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 인정 불가,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도 불가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함

## [별도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 선정 대상

<b>3순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없는 <b>신혼부부</b>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04.17. ~ '26.04.17.)인 사람</li> <li>• 자녀가 없는 <b>예비신혼부부</b>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li> </ul>
------------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 인정 불가**

###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무작위 추첨

### ■ 공급대상별 선정방식

#### [일반 선정]

- 모집인원 : 420세대 (총 공급물량의 70% 범위 이내 (추가)예비입주자 2배수 선정)
- 적용기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선정 대상(순위)과 가점방식 적용**
- 주택배정 : 전체 대상주택 기준 210호 우선 배정

#### [별도 선정]

- 모집인원 : 180세대 (총 공급물량의 30% 범위 이내 별도 선정 대상 (추가)예비입주자 2배수 선정)
- 적용기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무작위 추첨**
- 주택배정 : 잔여 대상주택 기준 90호 순차 배정

구 분	공급대상	공급물량	모집인원	선정기준	주택배정
일반 선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1~5순위	<b>210호</b> (70%)	<b>420명</b> (2배수)	i. 자격조사 및 적격자 확정 ii. <b>가점 합산 고득점자</b> iii. <b>가점 항목별 고득점자</b> iv. 동점 경합시 <b>순번 추첨</b>	전체 대상주택 기준 (공급주택목록 참조) <b>일반선정(210호) 우선배정</b> 순위 및 순번별 순차 주택배정
별도 선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3순위	<b>90호</b> (30%)	<b>180명</b> (2배수)	i. 자격조사 및 적격자 확정 ii. <b>적격자 대상 순번 추첨</b>	<b>별도선정(90호) 순차배정</b> 추첨순번별 순차 주택배정

※ 각 공급대상별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공급(계약)할 수 없으며, 각 공급대상별 미계약 물량은 공급대상간 상호 전환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추후 공급(계약) 상황에 따라 상기의 방식으로 선정된 각 공급대상별 2배수 (추가)예비입주자의 주택배정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급대상별로 추가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서류

- **모집공고일(26.04.17.(금))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확인 요망	-
입주 신청서	- 접수장소(인천광역시청 본관1층)에 비치 - 공사 홈페이지의 모집공고에 첨부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공사 양식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주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세대주와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등)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 (주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혼인신고일 확인용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예비신혼부부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공사 양식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 단, 예비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란 모두 서명 필요	

<p>자산보유사실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내역 등을 기재 후 신청자가 <b>자필 서명</b>하고 관련 <b>증빙서류를 첨부</b>하여 제출(첨부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참조)</li> <li>※ 신고 누락된 소득,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li> </ul>	<p>공사 양식 작성</p>
<p>자산보유사실 확인 증빙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제출</b></li> <li>·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li> <li>·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 대금납부 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 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li> </ul>	

■ 가점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수급자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li> <li>※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li> </ul>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 서류</li> <li>·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li> <li>※ 신청자 본인서류 제출이 원칙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의로 발급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 제출 가능</li> </ul>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li> <li>※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li> </ul>	
청약통장 가입자	<p>청약통장 순위 확인서</p> <p>* 동일순위 경합 시, 활용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li> <li>-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발급 → [기타임대주택용] 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li> <li>· 발급 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04.17.</li> <li>· 발급 관리번호 : 2026980084</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p>가입은행 또는 청약홈</p> <p>(<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p>

## ■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b>한부모가족</b>	행정복지센터
신생아 가구	출생증명서	- 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 출생 신고 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해당병원 등
	입양관계증명서	-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임신진단서 임신헌인서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헌인서 (병원 직인 날인)	
자녀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세대구성 확인서 작성 후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공사 양식 작성
외국인 세대원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리인 신청시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배우자가 대리신청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그 외의 자가 대리신청시) 본인(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행정복지센터 등

## ■ 향후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서류제출기간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아래 해당일에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생아 가구	• (출산) <b>계약일에</b>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입양) <b>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b>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센터
	• (임신 중) <b>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b>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제출	병원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6.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및 보유자산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목	유의사항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천원주택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대상·순위별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li> <li>•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li> <li>•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예비 입주자 선정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 전산검색결과 소득·자산 초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li>• 선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및 입주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및 입주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 지위의 유효기한은 2026.12.31.까지입니다.</li> </ul>
주택배정 및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배정 및 계약체결 전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li> <li>•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li> <li>• 주택의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순번(동호지정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일시에 불참하는 등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다만, 계약일시 이전 또는 계약일시 기간내에 순번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마지막번호 이후 번호로 예비순번을 재부여합니다. 순번연기자가 다수일 경우 기존 예비순번 순서에 따라 순번을 재배정합니다. (예: 예비순번 1번, 11번, 25번이 순번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 1번→601번, 11번→602번, 25번→603번 부여)</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동호지정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동호지정 장소에 없을 경우 다음 순번자부터 동호지정을 진행하며, 동호지정 장소에 복귀한 시점 진행순번으로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동호지정 진행중 본인 계약순번이 지난후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회를 부여하나 반드시 본인 계약순번 동호지정 진행시간에는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미도착시 불참으로 처리)</li> <li>•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입주지정기간)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li> </ul>

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예비신혼부부</b>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b>세대구성 확인서</b>'를 제출 하여야 하며, <b>계약체결 시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b>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b>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b>(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b>제출</b>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공급신청 시 제출한 '<b>세대구성 확인서</b>'와 <b>실제 입주하는 세대구성원 명단</b>(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b>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b>됩니다.</li> <li>• <b>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시 또는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에 제출</b>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li> </ul>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는 기존에 대출받은 <b>주택도시기금</b>(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기금,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b>입주하기 전까지 상환</b>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은 불요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해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li> </ul>
재계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b>재계약 요건을 충족</b>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b>임대조건이 변경(임대료 할증 등)되거나 재계약이 거절</b>될 수 있습니다.</li> <li>•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b>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b> 단, <b>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임대기간(최장 6년) 내 월임대료는 3만원</b>으로 유지됩니다.</li> <li>•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월임대료(3만원) <b>연체 시, 월임대료(3만원) 외 연체료가 부과</b>됩니다.</li> <li>• <b>재계약시</b> 입주자의 소득 향상으로 <b>입주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b>한 입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b>월임대료(3만원) 이외의 임대료 할증분 전액을 부담</b>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는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예비입주자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li> <li>• 입주 시, 지원주택에 <b>전입신고</b>를 하셔야 합니다.</li> <li>•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1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li> <li>• 인천도시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li> <li>•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li>•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li> <li>•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mp;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등</li> </ul>

항목	유의사항
	<p>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인천광역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지침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ul>
양도 전대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임대주택은 <b>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b>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로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시 퇴거 조치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7.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문의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처 매입임대사업팀</li> </ul>
방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기간 : <b>2026.05.11.(월) ~ 2026.05.15.(금), 10:00~17:00</b> (점심시간 12:00~13:00 제외)</li> <li>•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li> </ul> <p>※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차량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p>

2026. 04. 17.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예비입주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b></li> <li>•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구분		산정방법	
금융 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li> <li>•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 공공기관 대출금</li> <li>•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li> <li>-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li> <li>-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li> <li>-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li> <li>-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li> </ul>	
		일용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li> <li>-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li> <li>-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li> <li>-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li> </ul>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li> <li>-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li> </ul>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li> <li>- 사업자등록증</li> </ul>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종합소득</li> <li>- 금융정보 조회결과</li> </ul>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p>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li> <li>*「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li> </ul>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li>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li> <li>-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li> </ul>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li> <li>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li> </ul>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	본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a href="#">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a>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도시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시기금 대출 검색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출자금/ 출자비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으로 대체 가능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_\_\_\_\_ (인)

20    년    월    일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